

의안번호	2212700
의 퇴 인	강경숙 의원
회 답 일	2025.09.12.
추계번호	25C4831

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억원(연평균 1억원)으로 추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250	-	-	250	-	500	100

주: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(제2항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교육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(제4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기관 및 인공지능교육 관련 기관, 단체, 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6조 (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종합계획은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의무규정
3	안 제7조 (실태조사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9조 (인력의 양성 등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양성 또는 재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. 1.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교원 및 강사 2. 인공지능을 활용·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 3. 제14조에 따른 인공지능교육산업 지원에 필요한 인력 4. 그 밖에 인공지능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	재량규정
5	안 제11조 (인공지능교육 윤리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3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(이하 이 조에서 “윤리규범”이라 한다)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과 인공지능교육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교육분야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6	안 제12조 (인공지능 영향평가 등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학생 평가에 활용되는 등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4호차목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교육을 받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.	재량규정
7	안 제13조 (인공지능교육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협력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기술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(제2항)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인공지능교육을 위해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8	안 제14조 (재정지원 등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인공지능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	×	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교육 기회 보장, 역기능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· 이는 선언적·권고적 형식의 규정이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
2	안 제6조 (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)	○	
3	안 제7조 (실태조사)	×	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인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·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기존 유사 조사가 존재하여 산출이 어려움 ·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'19년부터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
4	안 제9조 (인력의 양성 등) 안 제11조 (인공지능교육 윤리)	×	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원, 활용·개발 지식을 보유한 인력 등의 양성·재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· 교육부를 통해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수행되고 있거나 수행이 예정되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· 교육부는 AI 인재양성을 위한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, '25년 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됨 · 참고로, 교육부는 비전공자 대상 AI 윤리·활용 기본교육 및 예비교원 AI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'26년부터 시행할 계획임
5	안 제12조 (인공지능 영향평가 등)	×	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교육에 활용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· 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· 그러나, 영향평가의 범위·대상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· 참고로,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 규정이 포함된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이 2026.1.22. 시행 예정이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'26년 영향평가 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6	안 제13조 (인공지능교육산업 진흥을 위 한 지원과 협력) 안 제14조 (재정지원 등)	×	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· 또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· 동 규정은 국가 등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, 본 추계서에서는 ①인공지능교육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)의 수립(안 제6조), ②실태조사 실시(안 제7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
-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(이하 “「인공지능기본법」”)의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
 - － 2026.1.22. 시행 예정된 「인공지능기본법」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등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¹⁾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예정액을 준용함
 - －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부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으로 하고, 실태조사는 「인공지능기본법」을 참조하여 매년 이루어진다고 가정

□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1)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

제6조(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수립·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⑦ (생략)

제38조(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의 작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·수립·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를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·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「인공지능기본법」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편성 예정액을 준용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5억원(연평균 1억원)으로 추계

[표 2]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수립 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250	-	-	250	-	500	100

주: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